

겨울철 발판소독조[축사·사무실 등] 운영 요령

< 기본 방향 >

- ◆ [현행 규정]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무실·사료창고·축사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(가축전염병예방법)
- ◆ [겨울철 운영] ① 소독조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또는 출입구(축사 등) 안쪽으로 이동하여 사용 ② 부득이한 경우 소독조에 동결방지제 사용

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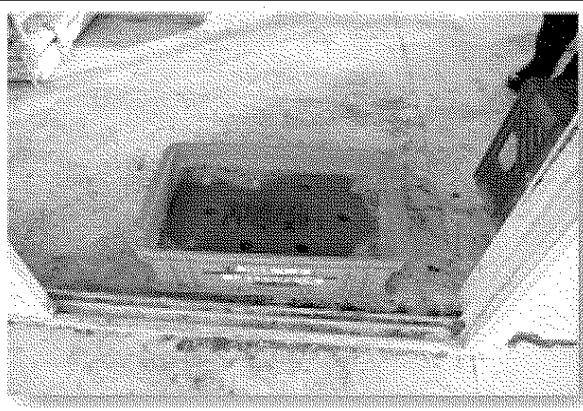
소독조 운영 일반원칙

- ◆ 출입구(축사 등) 발판소독조는 결빙되지 않도록 출입구(축사 등) 안쪽으로 이동하여 사용
- ◆ 소독수의 동결방지(열선, 보온장치, 실내보관 등)를 통한 효력 저하 방지
- ◆ 겨울철 낮은 온도(4°C 이하)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저하되므로 사용설명서에 따른 희석 비율을 고농도(유기물조건)로 사용 권장
- ◆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또는 알데하이드 계열 소독제 사용 권장
 - * 산화제 : 이소시안산나트륨, 3종염 등, 알데하이드 :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등
(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유기물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사용 자양)
- ◆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권장
- ◆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전 세척솔·물(세척조)을 이용하여 신발(장화)에 묻은 유기물 제거 권장
- ◆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
- ◆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역조치(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철저, 외부인 출입통제 등) 병행 실시
- ◆ 농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소독수에 동결방지제를 첨가하여 사용

II**동결방지제 사용요령**

- ◆ 동결방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선택하여 물이 아닌 동결방지제에 고농도(유기물조건)로 희석하여 사용
- ◆ 동결방지제는 차량용 원도우 워셔액 원액(메탄올 40% 함유) 사용
 - * 인체 및 환경독성을 감안하여 에틸렌글리콜 함유 부동액 사용 금지
 - ** 자동차 원도우 워셔액(메탄올 40%)도 발판소독조 등 제한적으로만 사용
- ◆ 환경독성 및 인체독성 우려를 감안하여 인체 및 차량 분무 사용 금지
- ◆ 기타 '소독조 운영 일반원칙' 준수 등
 - ◆ 소독제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, 날씨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III**소독조 운영 사례**

세척조(세척솔·물) 및 소독조	발판소독조
	

※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 관련 추가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→동물방역→가축방역→조류인플루엔자→소독요령 참고